

문서번호	디자인건축과-5061
결재일자	2016.2.17.
공개여부	부분공개(5,6)
보도여부	

주무관	도시디자인팀장	디자인건축과장	도시관리국장
박철희	노종섭	유형우	02/17 이동일
협 조			
	건축관리팀장	이상옥	
	광고물관리팀장	임종화	

- 2016년 ‘국가안전대진단 연계’ 해빙기 대비 - 재난취약시설 등 안전점검 계획

2016.2.16.



강 북 구
(디자인건축과)

- 2016년 '국가안전대진단 연계' 해빙기 대비 - 재난취약시설 등 안전점검 계획

해빙기에 발생하는 각종 시설물의 균열 및 붕괴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과 연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I

추진근거

-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30조(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등)
- 16년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계획
--- 안전치수과-1677호('16. 02. 01)

II

추진방향

- 해빙기 대비 재난위험요인 사전제거 및 안전조치
 - 장기 혹한으로 늦어진 공기 만회를 위한 무리한 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
 - 균열부위 지하수 · 침투수에 의한 철근부식, 배부름 발생 등으로 축대 · 옹벽 붕괴 우려구간 사전 안전조치
 -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 실시
 - ▶ 동 주민센터 보고내용 및 순찰적출 사항을 기준으로 담당자 현장 조사 후 시설물 상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건축주에 통보조치토록 하고, 관리대상은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후 등급지정하여 관리

III

일제조사 및 안전점검 실시계획

■ 점검(조사)기간 : 2016. 02. 16 ~ 03. 31

■ 점검(조사)반 편성 --- 붙임 1. 점검반 현황 참고

- 총 괄 : 디자인건축과장
- 점검반 : 담당팀장을 조장, 담당 직원을 조원으로 3개조 13명과 외부전문가 (건축사 2, 기술사 1) 3명 등 총 16명으로 편성

■ 점검(조사) 대상

- 점검대상 : 해빙기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
--- 붙임 2. 점검대상 및 담당자 지정 현황 참고

구 분	대상시설	시설수	비 고
합 계		98	
소 계		72	
특정관리대상시설물 (해빙기대비)	· 대형건축공사장	1	C등급 1개소
	· 중단된 대형건축공사장	1	C등급 1개소
	· 대형건축물	16	A급 10개소, B급 5개소 신규 1개소
	· 연립주택	46	B급 46개소
	· 대형광고물	8	A급 6개소, B급 2개소
소 계		2	
급경사지	· 옹벽	2	C급 1개소, D급 1개소
소 계		24	
사설위험시설물 (자체관리)	· 노후건물	7	C급 7개소
	· 담장	12	D급 1개소, C급 11개소,
	· 축대 · 옹벽 · 석축	5	D급1, C급2, 신규2개소

- 일제조사대상 : 해빙기에 붕괴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
 - ▶ 해빙기 대비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건축물의 축대 · 옹벽 · 담장 · 절개지, 지하굴착 공사장 등 조사하여 점검시행(자체 조사절차에 따라 시행)
 - 건축공사장 : 총공사비 50억원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10,000㎡이상
 - 대형건축물 : 준공 후 15년 이상 건축물로써, 11층 이상 ~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,000㎡ 이상 ~ 30,000㎡ 미만

- 연립주택 : 준공 후 15년 이상 건축물로써, 연면적 660㎡ 초과, 4층 이하
- 급 경 사 지 :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, 경사도 34도 이상, 길이 20m 이상인
인공 비탈면
- 사설위험시설 : 개인 소유의 노후건물, 담장, 옹벽, 축대 등 동주민센터 보고,
담당자 순찰 및 민원에 의하여 접수된 위험시설물

■ 점검(조사)방법 --- 붙임 3. 시설물 유형별 점검 착안사항 참고

-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공사장 및 연립주택, 사설 위험시설물등 해빙기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시행
- 기존시설물이 아닌 재난취약시설물은 해당 동 주민센터에 협조를 받아 자체 조사하여 안전점검 시행

※ 자체 조사방법

동 보고 및 민원신고사항, 현장순찰 확인 → 1차 동담당자 현장확인(대상여부 판단)
→ 위험요인이 있을 경우 점검대상(안전점검이 필요한)에 포함 → 외부전문가와 함께
2차 점검 → 등급 부여 → 관리 시설물로 지정

- 건설공사장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 자체교육 실시토록 행정지도
- 점검 후 해빙기 안전점검표 및 실적보고서 제출
 - 붙임 4. 6. 안전점검표 및 안전점검 실적보고서 참조
 - ▶ 대형 건축공사장 및 사설 위험시설물 등 : 외부전문가 및 담당공무원 합동점검
 - ▶ 연립주택 및 대형건축물 : 담당공무원 점검
 - 보수·보강이 이행되어야 할 시설물은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

■ 중점점검 내용

◆ 대형건축공사장

- 공사장 주변 지반 균열, 침하 및 인접건물 등 피해여부
- 흙막이 가시설의 손상, 변형, 부식, 변위, 침하여부
- 타워크레인, 휠스, 추락방지시설 등 가설물의 안전여부
- 화재발생 위험요소 및 진압장비 비치여부 등
- 주변 지반침하 발생여부 및 기타 주민불편 사항 방치여부

◆ 사설위험시설물 및 급경사지 등

- 노후 건축물의 균열, 파손, 변위, 지반침하 등으로 불안전 요인 발생여부
- 축대 · 옹벽의 균열, 파손 배부름 현상 및 배수불량 여부
- 바닥 포장부위 침하 및 균열 발생 여부
- 담장의 전도 징후 여부

■ 점검수수료 지급

- ▶ 지급대상 : 외부전문가(기술사, 건축사) 3인
- ▶ 예산과목 : 디자인건축과, 건축행정향상, 건축물안전관리, 사설위험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, 일반운영비, 사무관리비
- ▶ 소요예산 : 792,900원(3인*각1일*264,300= 792,900원)

IV

행정사항

-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토록 시설물 관리주체에 행정지도
- 보수 · 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관리주체에 안전조치토록 통보하고 조치 완료시까지 지속관리(해당 시설 동 담당자 주관)
- 안전점검결과 보고 : 안전치수과로 중간보고(3.4까지) 및 최종보고(4.1까지)

- 붙임 : 1. 안전점검반 편성 현황 1부
2. 안전점검 대상시설 및 점검담당자 지정현황 1부
3. 시설물 유형별 점검 착안사항 1부
4. 해빙기 건설공사 등 안전점검표 1부
5. 해빙기 안전점검 보고서(서식) 1부
6. 해빙기 점검실적 보고서식(중간, 최종) 각 1부. 끝.